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일부장관의 북한인권재단 임시이사 임명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69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 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u>제12조의2(임시이사 임명 특례)</u> ① 통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

현행	개정안
	<u>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u> <u>③ 그 밖에 임시이사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은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등의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제10조),¹⁾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두고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이사를 구성하되,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제12조).

□ 통일부는 2016년 3월 이 법 제정 이후 재단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청하였으나²⁾ 2024년 10월 현재까지 국회의 이사 추천이

1)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³⁾

-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아직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촉구하여 국회에서의 이사 추천 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의결하기도 하였음.⁴⁾

또한, 202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김태훈 등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재단이사 후보 5명이 국회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사추천부작위위법확인’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⁵⁾

- 개정안은 국회의 이사 미추천으로 인해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임시이사의 임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출범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재단은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2016. 3.)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로서, 정부 출연금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2) 재단 이사 추천 관련 통일부 공문은 총 13회[2016년 4회(8.11, 10.5, 11.4, 12.15), 2017년 1회(8.24) 2018년 3회(3.2, 4.19, 11.9), 2019년 1회(8.28), 2020년 1회(3.27), 2022년 1회(7.25.), 2023년 1회(8.30.), 2024년 1회(7.31.)]임. 통일부는 2022년 9월 법 제12조에 따른 장관 추천 몫으로 이정훈(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범수(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음.

3) 2021년 3월 교섭단체(국민의힘)이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등 5명 추천서류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하였다고 언론 보도(3. 24.)된 바 있고, 2022년 8월 및 2024년 8월에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5명의 재단 이사 후보를 국회에 추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2023. 1. 27., 2024. 9. 19. 등)됨.

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3.10.23.), “국가인권위,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

5) 2024년 10월 17일, 2023누7291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규정되었지만, 동 재단이 출범되지 못하고 있어 재단이 수행하도록 한 사업의 일부를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임시이사를 임명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의 수행,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이 일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재단 임원인 이사 12명 중 10명을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구성의 민주성·다양성을 제고하고 재단 운영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당초 입법 취지, 그리고 국회가 행정부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인사 추천 등을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 온 오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⁶⁾⁷⁾

□ 통일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의 목적인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달성을 위해서는 재단 운영이 필수적인 바 조속한 재단 출범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임.

6) 참고로, 국회가 행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의 임원 등을 추천할 때 그 기한을 둔 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음. 즉, 국회의장은 국회에 설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 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교섭단체가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특정 직위의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인사 추천 관련 입법례는 추천 또는 임명의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붙임 [참고 법률] 참조.

7) 「민법」 제63조에 따를 경우에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동 재단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입법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

< 북한인권재단 설립 추진 관련 경과 >

- 2016.3.3. 「북한인권법」 제정·공포, '16.9.4. 시행
- 2016.3~8월, 재단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계획(안) 마련
 - 재단 설립위원회 회의 개최('16.3.25, 5.20, 8.26) 등 설립 준비
 - △정관 인가('16.8.31) △직제 편성(42명) △예비비 편성(47억원) 등
- 2016.9월, 재단 사무실 마련 등 설립 및 운영체계 기반 구축
- 2018.6월, 재단 출범 지연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
- 2016~'24년, 대국회 재단 이사 추천 협조요청 공문 발송(13회) 등 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 협조·소통 노력 지속
 - * △'16년 4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1년 1회
△'23년 1회 △'24년 1회

< 국회의 임원추천 관련 입법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③ (생략)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⑦ ~ ⑩ (생략)

「국회미래연구원법」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 · ② (생략)

③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 ⑧ (생략)

문 의 처

02)6788-5269